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561호 2018. 07. 05.(목)

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2018-116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-----2

회 람										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561호(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8-116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. 07. 02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18 - 2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18년 07월 02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부잔교 및 연락교 이설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 해소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마도동 79-2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476㎡(직접:126.4㎡, 간접:349.6㎡)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18. 06. 29. ~ 2033. 06. 28.(15년)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성 명 : 사천시장(건설수도과장)
 -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